

**□ 2004년 4월분 심사기준(지침)**

적용일 : 2004년 5월 1일 진료분

**☞ 변경**

연번	제목	변경 전	변경 후
1	다발성 하지정맥류에 실시 한 경화요법 인정 기준	<p>다발성 하지정맥류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화요법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1. 광범위 정맥류발거술을 선행 후 잔여정맥류에 대하여 경화요법을 실시한 경우 : 편측당 총 100%(50% + 25% + 25%, 1회 시술시 최대 3부위 인정) 범위 내에서 1회만 인정함.</p> <p>2. 정맥류발거술 등 선행수술 없이 경화요법만을 시행한 경우 : 1차 시술시는 편측당 총 200%(100% + 50% + 50%, 1회 시술시 최대 3부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1차 시술로 효과가 충분치 않아서 경화요법을 추가 시술(2차 시술)하는 경우에는 편측당 총 100%(50% + 25% + 25%, 1회 시술시 최대 3부위 인정) 범위 내에서 1회만 추가 인정함.</p>	<p>다발성 하지정맥류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화요법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1. 광범위 정맥류발거술을 시행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잔여정맥류에 대하여 경화요법을 실시한 경우 : 편측당 총 100%(50% + 25% + 25%, 1회 시술시 최대 3부위 인정) 범위내에서 1회만 인정함.</p> <p>2. 정맥류발거술 등 선행수술 없이 경화요법만을 시행한 경우 : 1차 시술시는 편측당 총 200%(100% + 50% + 50%, 1회 시술시 최대 3부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1차 시술로 효과가 충분치 않아서 경화요법을 추가 시술(2차 시술)하는 경우에는 편측당 총 100%(50% + 25% + 25%, 1회 시술시 최대 3부위 인정) 범위 내에서 1회만 추가 인정함.</p>

**□ 2004년 5월분 심사기준(지침)**

적용일 : 2004년 6월 1일 진료분

**☞ 신설**

연번	제목	심사기준(지침) 내용
1	하지정맥류상병에 자206 광범위 정맥류발거술과 자205 사지정맥류 국소제거술의 인정 여부	하지정맥류 상병에 실시하는 광범위 정맥류발거술은 local resection을 모두 포함하는 수치료이므로, 동측에 자206 광범위 정맥류발거술과 동시 또는 일정기간 내에 잔여정맥류에 대하여 자205 사지정맥류국소제거술(가.경화요법 또는 나.국소제거술)을 시행하더라도 광범위 정맥류발거술만 인정함.